

###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운영 관리”를 “운용·관리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강남구”를 “서울특별시 강남구(이하 “강남구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“(기금의 운용 관리)”를“(기금의 운용·관리)”로 하고, 제4조제1항 중 “구청장”을 “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기금을 구”를 “기금을 강남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.

제5조제1항 단서 중 “포함”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」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”을 “포함”는 강남구 재무관,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강남구 지출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제6조를 삭제한다.

제7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(장부의 비치) 기금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춰 기금운

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·보존하여야 한다.

1. 기금관리대장(별지 제1호서식)
2. 현금출납부(별지 제2호서식)

제8조(재정운용기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심의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2. 기금운용의 성과분석
3. 그 밖에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되되, 특정 성(남성 또는 여성)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서 하며,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기획경제국장
2.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구의원 1명
3. 대학교수, 공인회계사,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

제9조(위원의 임기)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, 위촉

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10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1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.

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·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.

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제12조(간사 등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, 간사는 재무과장이 되며, 서기는 지출팀장이 된다.

제13조(회의록)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.

②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.

1. 회의 일시 및 장소
2. 출석위원의 직, 성명

3. 회의 안건과 심의·의결 내용

제14조(수당)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전문가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기금 관리 대 장

연월일	예 금					인 출		잔 액
	재 원	예금종류	금 액	이 율	기 간	적 요	금 액	

[별지 제2호서식]

현금출납부

연월일	지급명령번호	예산과목		적 요	채권자	자금배정액	지급액	잔액
		세부사업	통계목					



<신 설>

식)  
 2. 현금출납부(별지 제2호서식)  
 제8조(재정운용기금 심의위원회  
 설치 및 구성) ① 기금의 운용  
 ·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  
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  
 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심의위  
 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 
 둔다.  
 1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  
 산보고서의 작성  
 2.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 
 3. 그 밖에 기금의 관리·운용  
 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  
 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 
 사항  
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 
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 
 구성하되, 특정 성(남성 또는 여  
 성)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  
 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  
 야 한다.  
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 
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며,  
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  
 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

<신 설>

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  
 하도록 하여야 한다.  
 1. 기획경제국장  
 2.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소  
 관 상임위원회 구의원 1명  
 3. 대학교수, 공인회계사, 세무  
 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대한  
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
 제9조(위원의 임기) 당연직 위원  
 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  
 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 
 으로 하되, 한 차례에 한정하여  
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  
 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  
 은 기간으로 한다.  
 제10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  
 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 
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.  
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 
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 
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 
 제11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 
 등)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 
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 
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 
 참여할 수 없다.

<신 설>

<신 설>

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·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.

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제12조(간사 등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, 간사는 재무과장이 되며, 서기는 지출팀장이 된다.

제13조(회의록)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.

②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.

1. 회의 일시 및 장소
2. 출석위원의 직, 성명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3. 회의 안건과 심의·의결 내용  
제14조(수당)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전문가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